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36回平昌郡議會

第 1 號

平昌郡議會事務課

日 時 : 1995年 11月 10日(金)13時36分

場 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場

議事日程 (第1次 豫決特委)

1.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選任의件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幹事選任의件
3. 1995年度第2回平昌郡一般會計與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審査된 案件

- | | | |
|---|-------|------|
| 1. 報告事項 | _____ | 2 面 |
|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選任의件 (委員長 提議) | _____ | 2 面 |
| 3. 委員長(李相薰) 當選人事 | _____ | 3 面 |
| 4. 豫算決算特別委員會幹事選任의件 (委員長 提議) | _____ | 3 面 |
| 5. 幹事(李慶鎭) 當選人事 | _____ | 4 面 |
| 6. 1995年度第2回平昌郡一般會計與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平昌郡守提出) | | |
| 가. 歲 入 | _____ | 13 面 |
| 나. 議會事務課 所管 | _____ | 22 面 |
| 다. 企 劃 室 所管 | _____ | 23 面 |

1. 報告事項

(13時06分)

○ 議事係長 咸京鎬 : 의사계장 함정호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전에 있는 제1차 본회의에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에 이어 위원 7인으로 하
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후
전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제1차 회
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일 의장님으로부터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5일간의 심사일
정으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은 잠시후 위원장, 간사
선임이 있는 다음 '95년도 제2회 추가경
정예산안을 심사하여 11월 15일 심사보
고서 작성을 끝으로 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
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
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이상훈 위원님의 주재로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職務代行 李相薰 : 이상훈 위
원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평
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
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사회를 맡고 있는
본위원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자로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될때 까지 여러분
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選任의件
(委員長提議)

(13時49分)

○ 委員長職務代行 李相薰 : 그러면 의
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장선임의건을 상정 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에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洙現 委員 : 이수현 위원입니다. 위원장에 이상훈 위원을 추천 합니다.

○ 委員長職務代行 李相薰 : 지금 우강현 위원께서 김종영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 이상훈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이상훈 위원께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委員長(金鍾永)當選人事
(13時50分)

○ 委員長 李相薰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경륜과 덕망이 부족한 본위원에게 제2대

의회에서 처음맞는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겨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이번에 심사할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보다 심도있고 진솔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서로가 의사를 존중한 가운데 민주적인 심사활동이 이루어져 계획된 기간내 원만히 심사를 마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幹事選任의件
(委員長提議)

(13時51分)

○ 委員長 李相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洙現 委員 : 이수현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이경진 위
원을 추천합니다.

○ 委員長 李相薰 : 지금 이수현 위원
에서 이경진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 하
였습니다. 다른위원께서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
로 이경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본 위원회의 간사위원으로 이경진
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경진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幹事(李慶鎭)當選人事

(13時52分)

○ 李慶鎭 委員 : 감사합니다.
예결위 간사로 선임된 이경진 위원입니
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간사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것을 다짐 드리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5. 1995年度第2回平昌郡一般會計및特別
會計追加更正豫算案(平昌郡守 提出)

(13時53分)

○ 委員長 李相薰 :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1995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
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세입과 세출의 의회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
습니다.

심사는 예산의 기능별 편성 순서대로 소
관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다음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장께서는 일
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순서대로 요점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 설명이 있겠습
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기획실장 신대송
입니다.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의 총규모는 52억5,9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51억5,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6억200만원으로 주민세가 5,100만원, 재산세가 800만원, 자동차세가 2억2,200만원, 농지세가 700만원, 담배소비세가 2억원, 종합토지세가 1억200만원, 도시계획세가 100만원, 과년도 수입이 500만원인 반면 도축세는 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9억4,700만원으로서 사용료 수입이 200만원 수수료수입이 1억2,6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이 3,300만원, 이자수입이 1억원, 순세계잉여금이 1,000만원, 잡수입이 7억6,7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억3,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재산임대수입 1억1,100만원과 사업장 생산수입 1억1,400만원은 감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이고 보조금은 38억6,000만원으로서 국고가 30억1,800

만원, 도비가 8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정재원은 기금수입 2억원과 보조금사용잔액 9,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재산매각수입은 7억4,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예산시 내역별로 상세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 규모는 51억5,300만원이며, 경제 성질별로 보면 물건비가 1억4,400만원, 자본지출이 58억1,800만원을 증액계상한 반면 인건비 5억4,500만원, 이전경비 2,900만원, 자치단체내부거래 9,500만원, 예비비및 기타에 1억4,000만원은 감되었습니다.

기능별 편성내역은 일반행정비가 20억2,200만원, 산업경제비가 10억8,200만원 지역개발비가 18억6,500만원, 문화및 체육비가 5억2,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의회비 800만원, 사회복지비 1억1,100만원, 민방위비 5,200만원, 지원및 기타경비 1억6,500만원은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억600만원으로서 상수도 특별회계가 2,3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5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5,600만원, 농공지구조성및 관리사업특별회계가 1억2,200만원이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1억원은 감되었습니다.

세입은 1억600만원으로서 사업의 수입이 5,000만원과 보조금 5,600만원이며 세출 예산의 경제성질별 내역은 물건비가 7,000만원, 자본이전이 5,900만원, 보존재원이 1억원, 예비비및 기타에 2,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이전경비 4,500만원과 용자및 지출 1억원은 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달동네 정비에 2억원, 황계진입로 마무리 토지보상에 8,000만원 청사 정기점검의 안전점검에 2,000만원 조둔리 소교량 마무리에 2,600만원, 울치리 간이상수도에 2,000만원, 유포1리 농로포장 2,000만원, 개수리 세월교 가

설에 1,000만원, 용평면 청사 보일러 정비에 3,000만원, 농업진흥지역 지정 도면제작에 1,500만원, 위생사업소 진입로 포장에 1,500만원, 대화 쓰레기소각장 보호시설에 1,000만원, 평창 쓰레기소각장 전기회선 발주기에 1,600만원, 평창 상수도 누수탐사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 조서 입니다.

계속사업비는 봉평면 남안교 가설공사로서 10억9,700만원이 소요되며 당해년도에 3억5,900만원을 투자하고 97년도 이후에 군도 양여금 사업으로 7억3,8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비 미부담 사업입니다.

군비 미부담 사업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에 총 64개소로 사업량이 되어 있습니다만, 군비가 이번에 6억원을 부담치 못하고 지금현재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서 추가로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수해복구사업비 확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은 총 68억원중에서 평창군에서 발주해야할 사업은60억4,893만6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국고가 35억6,228만6천원이고 도비가 44억61만8천원, 군비가20억4,60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기 때문에 내역은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李相薰 : 다음은 신고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辛敎善 : 전문위원 신고선입니다.

1995년도 제2회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정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계별 규모와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검토의견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199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52억5,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51억5,300만원, 특별회계가 1억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 신장율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7%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일반회계 총세입규모는 51억5,300만원으로서 주요 내역으로서는 지방세중 자동차세가 2억2,200만원, 담배소비세가 2억원이며 종합토지세가 1억200만원이고 그외 6개 지목에 7,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입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의 균유재산 임대료가 1억1,100만원 사업장생산수입이 골재낙찰차액1억1,300만원이 삭감되었고 수수료 수입중 종량제봉투판매수수료 8,600만원과 도세징수교부금중에서 취득세 7,800만원, 이자수입중 정기예금이자 1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94년도 보조금
송금 지연분을 포함해서 잡수입이 7억
6,700만원이고 송정택지매각수입중 과년
도분에 속하는 1억3,400만원이 과목경정
으로서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서 달동네 정
비사업에 2억원이 추가 내시가 되어 계
상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중 30억1,800만원은 '95수해
복구사업비가 35억6,200만원으로 대부분
이고 한우경쟁력사업에서 2억7,5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서 2억2,000만
원, 기타 5,000만원등 총5억4,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8억4,200만원은 '95수해복구
사업비가 4억4,000만원이고 문화예술회
관건립비 3억원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정재원중 재산매각수입에서 황계수해
주택 택지매각수입 3억6,300만원, 도암
농촌지도소 지소부지매각 1억8,100만원
과목경정 1억3,400만원등 7억4,800만원
이 감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9,200만원과 문화예술회관건립 진흥기금

수입으로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주재원은
137억 2,200만원으로서 20%의 자주재원
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경제성질별로 보면 기본정비가
전체의 33%를 점유하고 있고 자본적 지
출이 64%로 기정예산을 대비했을때 15%
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95년도 수해복구사업이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능별 내역으
로서는 의회비가 특수활동비등 800만원
이 삭감되었고 일반행정비는 20억3,000
만원으로 기획관리비에서 2억3,600만원
이 감되었고 공보비700만원, 내무행정비
21억7,100만원, 재무행정비 8,800만원
이며 사회복지비는 1억1,100만원이 감
되었으며 이중 복지사업비가 1,700만원
청소사업비 2,400만원이 증가되고 보건
위생비에서 1억5,200만원이 감액되었으
며, 산업경제비는 10억8,200만원으로서
농수산비가 8억100만원, 임업비2억5,100
만원, 지역경제비 3,1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18억3,100만원은 도시개발비 3억2,400만원, 건설사업비 10억8,800만원, 치수및 하수사업비 4억800만원, 교통관리비 1,100만원으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문화및 체육비5억2,000만원은 문화예술진흥비중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비 5억원과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 2,000만원으로 편성 되어 있으며 민방위비에서 5,200만원이 감된것은 소방비의 의용소방대 관련 보상금에서 3,700만원이 삭감된것입니다.

지원및 기타 경비는 1억3,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각종 반환금편성에 따른 증액분과 일반예비비 감액편성분을 포함한 것입니다.

계속사업비에 대해서는 이미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남안교 가설공사로서 계속사업에는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사업의 수입으로 잡수입중 간이상수도 주민부담금이 2개소에서 2,300만원이고 보조금은 진부상수도시설 확장공사의 국고보조금 5억원과 도비보조금으로 재원간 전출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사업비중 평창상수도 누수탐사관련사업이 6,500만원, 진부상수도 확장감리비 3,800만원이 감되었고 지방채상환은 94년도 토특자금 이자상환에서 4,500만원이 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으며 세출은 국민주택용자금 관리 프로그램구입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은 국고보조금이 4,500만원, 도비보조금이 1,100만원이며 세출은 전액 의료보호사업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특별회계세입에 사업의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감액분이고 세출의 사업비는 일반용자금

사업이 감액이 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사업수입중 용자금 회수수입이 500만원 과년도 수입에서 용자금 미회수금이 500 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용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용자금 회수수입이 3개업체에서 들어온 것이고 세출중 지방채상환 1억과 예비비 2,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추경예산 세입은 총51억5,3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해서 8%가 증가 되었으며 지방세는 6억 200만원으로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 토세가 주 세입으로 자동차보유증가, 담 배소비량증가, 공시지가상승등에 대한

요인으로 증가 된것으로 판단합니다.

세외수입은 94년도 보조금등 송금지연분 의 잡수입이 대부분이며 금후 송금지연 에 따른 당해년도 세입결합등의 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이라 고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평창읍 달동네 정비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이며, 국도비보조금은 95년도 각종수해복구사업비와 보조사업 변경및 추가 내시된 사업비 위주로 편성 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재원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황계 수해주택 택지의 용도변경 승인지연에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편성 되었으 며 도암 농촌지도소 지소부지 매각수입 은 당초 인근 매매 실패가의 적용 착오 로 인해서 과다 책정된것에 대한 조정액 이고 기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과 문화예술회관 건립 진흥기금 수입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을 검토하여 보면 지방세 중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등과 세외수입 에 있어 공유재산임대료 폐기물수집수수

료, 사업장생산수입등은 자체 재원을 근간을 차지하는 세원임에도 세입추계를 부적정 하게 하므로써 추경예산에 많은 증감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세입추계에 걱정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드릴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51억5,300만원은 직제개편및 결원을 적용에 따른 인건비 5억4,500만원이 삭감되고, 자체사업비 4억6,200만원, 95수해복구사업 54억4,800만원, 국도비보조 변경사업비 1억3,400만원등이며 예비비 1억6,600만원을 삭감하여 1% 선을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 주요내역으로서는 평창읍 달동네정비사업 2억, 횡계진입로 확포장공사 마무리 8,000만원, 용평면청사 보일러교체에 1억8,200만원이고 기타 95각종 공사의 입찰차액을 정리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투자한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95년도 수해복구사업은 총 54억4,800만

원으로서 국비가 35억6,200만원인 65%선이 되고 도비가 4억4,100만원인 8% 정도인 도비에서 부담하고 있고 군비는 14억4,600만원인 27%의 재원구조로 편성되어 있으나 이중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에 군비부담 9억2,500만원중 3억원은 부담하고 6억은 미부담되어서 추후 3회추경시 국도비 증액교부등의 결과에 따라서 부담해야 할 사업으로써 실제 95년도 수해복구사업 확정규모는 6억원을 포함한 60억 4,800만원이며 군비 미부담에 대한 특별대책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을 보면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이 64건에 15억9,500만원, 수리시설 23건에 8억800만원, 군도14개소에 7억8,700만원, 농로 28개소에 5억600만원 하천복구 14건에 4억300만원, 농경지복구 60ha에 3억8,600만원, 농어촌도로 8개소에 2억7,400만원, 소교량 14건에 2억7,200만원, 횡계7리교량 1억9,400만원 기타 2억2,300만원으로 편성 되어 있으며 대부분 사업이 차년도로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편성되어야 할 사항들이라고 보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대부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인한 균비부담을 변경 적용사업이며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남부지방 가뭄으로 인한 중부지방의 상대적인 사업 물량 변경으로 2억2,0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UR대비 농어촌투자사업비로 수출 백합종구 구입에 7,500만원이 투자 되었으며, 용평 오지개발사업인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3억5,500만원이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된것은 저온저장고 추진사업에 따른 현지 주민의 법인설립으로 인하여 사업 완공후의 사후관리등 자치단체의 재산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한 위탁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계속비 대상 사업으로는 봉평 남안교가설공사 10억9,700만원이며, 년부액은 95년도분이 3억5,900만원, 97년도분이 7억3,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이중 95년도 3억5,900만원은 95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오지개발 사업비를 2회 추경에 계속사업비로 변경승인 신청된 부분이고 97년도 7억3,800만원은 양여금 재원으로 충당될 사업으로써 연차별 재원 확보가 불확실하고 계속성이 없는 투자계획으로 계속비 대상사업으로서는 타당치 아니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 9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중에서 노후 보도블럭 정비외 7건의 사업들이 2회추경에 타사업으로 변경투자 되는것은 지방재정운영상 바람직 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6개사업에 1억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해서 1.6%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시설 주민부담금 2,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전부상수도 확장공사 5억원은 국고보조금에서 도비 보조금으로 재원이 이전된 사항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사업비중 국.도비 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새마을

소득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1억원이 감된 반면, 농공지구조성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3개 입주업체로부터의 용자금 회수 1억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 특별회계는 평창상수도 누수탐사비 5,000만원과 간이상수도 신설및 보수에 2,300만원이며 진부상수도시설 확장공사 감리비 3,700만원이 감된 것은 95년도 사업발주가 늦어짐에 따른 감리비의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볼수 있으나 96년도 사업분에 대한 감리비는 반드시 계상을 하여 부실공사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지방채상환 계획의 변경으로 4,500만원이 감액 조정 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일반소득특별지원사업 용자신청이 감소하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 1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주민에 대한 저리의 용자사업임을 감안하여 추후 사업시행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후 다수의 주민에게 해

택이 주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며 농공지구조성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용자금 회수 수입액으로서 국내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충당을 하였음.

마지막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5년도 8월 25일 평창군조례 제1467호로 평창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로 통합운영토록 공포되었고, 공포일로부터 2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2회추경예산안 제출시에도 이를 적용치 않은것은 조례에 어긋나는 사항일뿐 아니라 부당하고 심사의 대상이 아님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參 照 >

. 檢討報告

(끝에실음)
.....

○ 委員長 李相薰 : 신고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대송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기획실장 신대송입니다.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의 총규모는 51억5,274만4천원이며 세입별 내역은 지방세가 6억200만원, 세외수입이 9억4,689만6천원, 지방교부세가 2억원, 보조금이 38억5,968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정재원은 4억5,583만6천원이 감이 되어 예산 총규모는 51억5,274만4천원이 증가된 684억8,41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및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의 주요 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6억200만원이 증가되어 70억6,477만

1천원으로써 보통세가 5억8,700만원으로 내역은 주민세가 5,100만원, 재산세가 800만원, 자동차세가 2억2,200만원, 농지세가 700만원, 도축세는 300만원이 감이 되었고 담배소비세가 2억원, 종합토지세가 1억200만원입니다.

다음 목적세는 1,000만원으로서 도시계획세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500만원이며 자동차세가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9억4,689만6천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3,548만4천원, 내역은 재산임대수입이 균유재산임대료가 1억1,151만1천원이 감이 되었고 사용료 수입이 155만1천원, 수수료수입이 1억2,598만8천원이 증가 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유료 예방접종이 355만원, 증지수입이 3,600만원, 종량제봉투판매수수료가 8,643만8천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골재물량실적 저조로 1억1,346만원이 감이 되었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취득세가 7,780만원, 폐천부지매

각징수교부금은 지정재원으로 과목이 결정되어서 4,548만4천원, 자동차운수사업 범위반과징금징수교부금 60만원으로 3,291만6천원이 증가 되었고 이자수입은 정기예금이자 1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9억1,141만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은 순세 계영여금이 1,017만4천원, 잡수입이 7억6,723만8천원인데 내역은 국유재산무단 점용변상금이 477만원, 기타 과태료가 1,450만원, 군도10호선 도로 확장 포장 사업 토지매입비 보광에서 내는 것인데 당초에 4억5,600만원으로 약정이 되었는데 체결후에 잔액868만7천원이 추가로 세입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징수업무 수수료 농진공 교부금으로 836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94년도 보조금 송금 지연분, 94년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결산후에 송금된 것이 8,435만8천원, 그다음 오지노선 버스구입비가 3,600만원, 정주권개발도분양대금이 2억9,262만1천원, 간이농산물집하장사업비가 1억3,

600만원, 오지개발도분양여금이 7,356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도암면신축에 따른 청사정비기금은 지방채 승인액은 3억원인데 실적에 따라서 세입조치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9,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폐천부지매각대 환불금 도분 1,633만원, 다음 자동 강우량측정 시스템설치 군비부담금 환불이 16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을 과목경정에 따라서 1억3,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중에서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달동네 정비로 2억원이 계상이 되었고 보조금은 38억5,968만4천원이 증액 및 변경내시 되었고 이중 국고보조금이 30억1,744만9천원, 내역은 생략하고 일반항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보조가 3억9,291만1천원, 사회복지비보조로 1,155만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로 4억8,595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로 21억1,702만원이 계
상이 되었습니다.

문화및 체육비 보조로 1,000만원이 증액
된 반면 도비보조금은 총 8억4,223만5천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일반행정비 보조
가 1억178만원, 사회복지비보조가 574만
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입니다.

산업경제비 보조는 1억7,739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주요내용은 95년도 가
올착수 경지정리가 국비가 삭감되면서
도비로서 8,868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한우 경쟁력 향상사업이라던가 가축방역
사업이라던가 젓소 경쟁력 사업 향상사
업이라던가 고품질 한우개량특화사업 같
은것은 도에서 물량조정으로 인해서 보
조금 까지 자연적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로 2억5,250만5천원,
문화및 체육비 보조로 3억1,300만원,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에 3억원이 계상이

되었고 동네체육시설확충에 도비가1,330
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 보조로 300만원을 증액 편
성을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정재원은 재산매각 수입이 7억4,851만
7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국유재산매각수
입은 4,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서는 7억8,851만7천원이 감
이 되어서 지정재원 총액대비 4억5,583
만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사용 잔액중 국고보조금 사용잔
액이 4,371만5천원이 남아서 계상이 되
었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4,896만6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부금및 기금수입은 문화예
술회관 건립진흥기금 수입으로 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李相薰 : 기획실장님 수고 하
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한후 계속 심사를 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27分 停會)

(14時40分 續開)

○ 委員長 李相薰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전까지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相薰 委員 : 이상훈입니다.

실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수해복구 사업비가 35억6,200만원인데 군비 부담율이 왜 그렇게 많은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수해복구 사업은 전국적인 피해상황을 봐가지고 금년도에는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충청도쪽에 수해가 많이 나는 바람에 보조액이 좀더 줄었다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일단 국고보조금 관계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도비와 군

비를 결정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따라서 군비를 부담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평창군에서 이것을 부담하겠다고 상부에다 먼저 보고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럼 저희들 입장에서는 군비나 도비를 더 많이 얻어올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그래서 군비가 19억을 부담해야 하는데 도에서 전망을 물었을때 저희들은 10억정도는 부담을 할것 같으니까 부족되는 9억은 도이상에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아직 그 관계는 도에서도 재원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다 특별교부세를 증액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6억 부담액에 대해서는 마지막 정리추경때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더 좋겠지만 만약 안내려 온다면 예비비 같은것을 지출하더라도 부담이 결정되어야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 李相薰 委員 : 세출예산안 심의를 할

때에도 이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세입
현황인데 UR대비 농수산투자사업비로
7,500만원이 투자된다고 하는데 무슨
애집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산업경제비 보조
에서 도비보조금 내역중에서 수출백합
종묘구입비로서 도비로서 3,750만원을
저희 군에다가 보조금으로.....,

○ 李相薰 委員 : 이것은 전문위원님께
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그것은 전문위원
이 검토하면서 나온 사항은 산업과에서
세출예산사항별 설명때에 보고드릴 사항
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의 세입만 가지
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30만본이 있었는데 도비가 3,750만원
군비가 3,750만원 해서 7,500만원이 계
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업과에서 자세하게 세출예산
보고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金鍾永 委員 : 김종영 위원입니다.
16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횡계 수해주택 매각수입하고 도암면 농

촌지도소지소매각부지매각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내용을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企劃室長 申大松 : 택지매각수입 횡
계수해주택택지매각수입으로서 3억6,300
만원을 당초에 계상을 했었는데 이 사업
은 사업이 아직 미완공 되었고 도시계획
이 변경고시가 되어야만 사업을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도암면 농촌지도소지소부지매각
하고 일반대부재산매각수입 관계는 당초
에 할때에 과다 책정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마침 감을 했습니다.

○ 金鍾永 委員 : 그때에 책정을 할때에
공시지가나 이런것을 따지지 않고 계상
을 했나요?

○ 企劃室長 申大松 : 당초 예산계상 할
때에는 감정평가없이 인근 토지매매 실
례같은것, 그런 가격에 준해서 계상을
했다가 나중에 감정을 했을때는 차이가
나서 감을 한것입니다.

○ 金鍾永 委員 : 지금 완전히 매각이
안된 상태이지요?

○ 企劃室長 申大松 : 감정만 했기 때문에 그만큼 감을 한것입니다.

○ 金鍾永 委員 : 그러면 나중에 입찰을 볼때 얼마가 더 많아질려는지 지금 잘 모르잖아요?

○ 企劃室長 申大松 : 그럴수도 있습니다. 토지매입을 할때 과다로 책정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보니까 차액이 나서 물론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늘어날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맞추어서 그때 세입을 변경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감정가만 가지고 했습니다.

○ 金鍾永 委員 : 이것은 놔두면 판매량이 높아지나요? 왜 입찰공고를 안하고 그냥 둥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그것은 관재계에 서 자세한 사항을 받아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실음)

○ 禹康鎬 委員 : 6쪽에 보면 재산임대 수입이 있는데 균유재산 임대료가 1억 1,151만1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어떤 사

유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당초예산 계상할 때 대지분 임대료에 대해서 목표액을 산정을 할때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을 하는겁니다. 당초에 금년도에 2억1,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산정이 잘못되어서 이번에 1억1,100만원을 감을 하는겁니다.

○ 禹康鎬 委員 : 2억1,900만원에서 1억 1,100만원을 감을 하면 거의 배를.....

○ 企劃室長 申大松 : 그래서 저도 96년도 세입때에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과로 하여금 촉구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알겠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이수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 의하면 하천골재 낙찰 차액이 1억1,300만원이 삭감 계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골재수입은 기정 예산에 1억2,346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전년도 대비를 해서 평균치를 내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골재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모래는 1,4800m³을 팔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3,496m³만 팔렸고 자갈도 17,500m³을 계획했는데 3,284m³, 그다음 막자갈도 2,3400m³을 계획했는데 10,600m³ 밖에 계획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관계과에 알아보니까 골재채취 예정지에 설계한후에 매장량이 사실상 심도가 얇기 때문에 매장량이 우선 적었고 그다음 수해때에 당초 매장되어 있던 골재가 유실된 예도 있고 또 금년도에는 하천골재보다도 육상골재가 많은데 육상골재로 하는것은 군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골재수입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당초 계획했던것 보다 30% 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기가 길어서 골재장 작업을 제대로 못한데도 원인이 있습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분석을 해보니까 육상골재가 우선 많고 하천골재가 없다 보니까 골재채취업자들이 육상골재 쪽으

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있고 하천골재 고시된 지역도 당초에는 약1m심도로 설계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파보니까 50cm밖에 안되었다 라던가 그다음 수해때 떠내려 갔다던가 이런 원인이 작용이 되가지고 차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마침 하천골재가 많이 안 팔린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새마을소득사업운영 관리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 회계 하고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로 통합 운영토록 공포 되었고 공포일로부터 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달로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2회 추경안 제출시에도 이를 적용치 않은것은 조례에 어긋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특별회계에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가 있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가 있었는데 이 두가지 조례를 평창군주민

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로 지난 8월 25일날 공포를 해서 두개의 특별회계를 하나로 묶어서 운영토록 조례가 개정되어서 8월 25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2월을 넘지않은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평창군새마을소득특별사업운영관리조례및 평창군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규칙에 조항이 있었는데 사회진흥과에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규칙이 2월이 보름이 경과된 지금까지 규칙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도 통제를 해서 2회 추경때에는 2개월 이내에 규칙이 제정된 후에 통합으로 다루었어야 당연한건데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고 현재 과에서도 규칙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내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지를 못하고 일단 이번까지는 다루게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집행기관에서 잘못 한것입니다.

○ 禹康鎬 委員 : 조례에 어긋나는 사항인데 특별회계를 다룰수 있습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그래서 저희들은 새마을소득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1억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용자가 일반기금에 있던것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안된것을 일반회계에서 다시 전출을 하게 되면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억원을 다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받아가지고 수해복구 사업에다 보충을 할려고 계획했습니다만 그런 착오가 따라서 다시 수정에 산안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특별회계 전체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두가지 사항은 저희가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넘겨서 수해복구사업을 1억원 미부담해서 7억 미부담하는 것으로 해놓고 연말 정리추경때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초대도 아니고 2대

의회때 이것을 조례로 했던것을 저희들이 어긋나는 사항을 다시 심사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말씀 드렸습시다만, 심사에서 제의를 해주십시오. 해주시면 저희들이 수정으로 해서 예산안을 별도로 바꿔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委員長 李相薰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다음은 세출예산의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會事務課長 李京植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경식 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예산편성 기준은 절감예산에 두고 당초 예산액 총4억4,668만8천원에서 779만5천원을 감한 4억3,889만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액부분은 1,270만원으로 두고 감액 부분은 2,04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감내역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첫번째 경상경비인 특수활동비 2개 항에 51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둘째로는 조례개정에 따라 회의참석비 672만원을 감액 하고 의정활동비와 의정활동비정액을 각각 320만원 하고 840만원을 중액 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로는 봉급과다 편성액 862만5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청사 커튼수선비로 70만원과 소회의실 에어컨시설비 4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에어콘은 여름에는 구입이 어렵고 겨울에 설치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로는

전반적으로 보일리는 추경으로 계상해서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난로
를 설치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相燾 : 위원여러분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會事務課長 李京植 : 저희 의회사
무과에서는 대부분 경상경비로 총 예산
의 0.6%정도 점하고 있습니다.

○ 李相燾 委員 : 설명서 22페이지 전문
위원실 운영은 왜 감이 되었습니까?

○ 議會事務課長 李京植 : 특수활동비는
감사원 감사와 저희들 자체감사결과 합
당치 않은 것으로 특수활동비를 삭감 한
사항입니다.

○ 委員長 李相燾 : 보충질의 하실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 기획실 소관

다음은 기획실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기획실장 신대송
입니다.

기획실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의 급여관리는 2억3,631만
7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기본급이 1억9,3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상여금이 5,000만원, 초과근무수
당이 4,300만원, 정액수당이 8,040만원
복리후생비는 1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주내용은 당초예산에서는 군하고 읍면의
풀관리로서 정원대로 계상했다가 결원율
에 따라서 감이 불가피 했습니다.

다음 기획관리는 47만5천원이 증이 되었
고 세부내용은 기획관리에 군정구호 정
비비가 860만원이 증이 되었고 국제화
추진협의회 여비보상을 540만원을 삭감
을 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작성용 컴퓨터구입이 15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에 시군구 예산운영란에

관서당경비로 117만원을 감을 했고 예산 담당공무원 업무추진비가 20만원, 예산 서출력용 프린터구입비로 320만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이 관서당경비는 지적과가 생기므로 풀관서당경비에서 감을 해가지고 지적과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투자관리 예산중에 투자심사관리에서 광천음료수생산준비기획단운영 급량비를 100만원을 감을 했고 경영수익사업추진 보상금을 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법무관리에 관보보급대를 164만 5천원과 대한민국법령집 구입비로 300만원이 부족되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법률 무료상담위원 수당은 고문변호사 수당을 144만원, 법무사 수당을 96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감된 원인은 당초 10회로 계획했던 것이 다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감을 했습니다 생활법률 무료상담반도 따라서 급식비도 7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소송사무처리에 항고및 상고 수수료도 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에 특수지역개발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부기정정 사항인데 95년도에 당초예산에 소규모 주민숙원편익사업을 편성할때에는 당초 읍면에서 투자했던 실적을 평균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읍면에서 추진하는 부기와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 했습니다.

96년도에는 이런 세부내역 없이 총괄적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겠습니다만, 95년도에는 이런 세부적으로 부기까지 계상이 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보도블럭정비로 2,000만원이 감이 되면서 골목길및 마을안길 포장으로 2,000만원을 바꾼 사항입니다.

다음 간이상수도보수, 마을공동시설보수 하수도정비, 농로보수및 정비, 소하천정비, 간이승강장정비, 소교량정비, 마을회관보수, 경로당보수, 공공시설보수는 감이 되었고, 약수-입탄간 농로포장에 1,500만원, 평안2리 농로포장 1,500만원

방림1리 간이상수도 보수에 1,000만원
대화2리 농로포장에 1,000만원, 유포1리
농로포장에 1,500만원, 재산2리 농로포
장에 1,000만원, 속사1리 농로포장에
1,000만원, 탑동리 암거및 농로포장에
1,500만원, 황계10리 하수도및 포장공사
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상반기 하
고 하반기에 각읍면별로 균형있게 저회
들이 예산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은 방림면에 청사정비
기금 이자 상환금으로 5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상을 했습
니다만 5만4천원이 부족된것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제지출금중 국고반환금은 지금까
지 국고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남은 국고분 입니다.

장애인 자녀학비로 12만8천원, 장애인
의료비로 27만6천원, 임도시설 사업비로
14만9천원, 의정사업비에 13만3천원을
계상했고 도비 반환금으로는 무직 미취
학청소년사설학원위탁사업비 8만2천원,
장애인 자녀학비지원 3만2천원, 장애인

의료비지원 6만8천원, 마을임시보관창고
설치비 44만5천원, 임도시설사업비6만6
천원, 의용소방대운영보조금 773만9천원
결핵관리사업비 84만4천원이 도비반환금
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반환금으로는 군유림 대부 임
대료 착오징수분 환불금으로 2만5천원
폐천부지매각대 환불금으로 1,63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수해복구비 부담율에 따라서
1억6,600만원을 감을 해서 현재 예비비
는 7억1,66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李相薰 : 위원여러분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劉燾文 委員 : 유돈문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보면 장애인 자녀학비, 장애인
의료비, 또 임도시설 사업비를 국고에
환수한것은 집행부에서 업무를 잘 못해
서 돈이 남아서 국고에다 환수했는지 여
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그것은 업무를 집행기관에서 잘못처리를 해서 반환 된것이 아니고요. 이것도 해당되는 주무과에서 다시 자세하게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일정한 사업을 하다보면 국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일을 하다보면 사업계획이 변경 되었다던가 그다음 사업을 목표대로 달성을 했는데도 잔액이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사항이 이번에 반환이 되는 것입니다.

○ 劉燉文 委員 : 그러면 금년도 장애인 자녀 학비가 나가는 나갔습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다나가고 이것은 남았습니다.

○ 劉燉文 委員 : 더 줄 학생이 없어요?

○ 企劃室長 申大松 : 이것은 94년도에 결산을 다 한것이기 때문에 결산서에 수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사업을 다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반환한 금액은 많지 않는데 임도시설 사업비 같은 경우도

국비나 도비를 실질적인 금액은 많지 않는데 반환하면 문제가 있을것 같습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그것은 장애인 자녀 학비라던가 그것은 94년도 결산을 해서 결산결과 남은 잔액을 해당되는 보조단체에 다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도시설에 대한것도 계약을 하게 되면, 모든사업을 계약을 하게되면 반드시 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까지도 설계변경을 해서 쓰다보면 또 남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국도비는 다 쓴것으로 하고 군비만 남기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지만 그것은 일정한 부담비율에 의해서 일정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의 남은 금액입니다.

○ 禹康鎬 委員 : 알겠습니다.

24쪽에 복리후생비, 효도휴가비 인상분이 있지요. 한명당 얼마정도 지급하는 겁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복리후생비는 효도휴가비가 당초에는 연 10만원으로 5만원씩 2회로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었습

니다. 추석때와 설날때 5만원씩 주던 것이 금년도 부터 본봉의 50%를 주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상분으로 1억3,000만원이 계상이 된것입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다음 구입은 재무과에서 했겠는데 제가 한가지만 여쭙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작성용 컴퓨터1대 구입 152만원 예산서출력용 프린터구입 320만원은 어느회사의 것을 구입하셨나요?

○ 企劃室長 申大松 : 조달가로 지금 계상을 한것입니다.

○ 禹康鎬 委員 : 어떤 프린터기로 구입하십니까? 조달가 320만원이면 일반시중에서 500만원 정도 가는 프린터기인지

○ 企劃室長 申大松 : 예산 프로그램 운영으로 예산프로그램을 각 시군 도까지 똑같이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존의 컴퓨터 가지고는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제가 보니까 컴퓨터가 320만원이고 프린터가 125만원이라고 하

면 말이 되지만 컴퓨터 125만원짜리는 아이들이 그냥 오락하는 컴퓨터로도 부족한 용량이거든요. 또 프린터가 320만원짜리라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제일 비싼것도 320만원짜리라면 엄청나게 비쌉니다. 위의것과 바뀌었으면 몰라도

○ 企劃室長 申大松 : 실무자의 얘기는 기존은 115만원 정도면 프린터기를 구입했는데 코리아제록스의 신형나온 프린터기는 현재 320만원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최신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이 없으면 예산편성을 못합니다. 과거에는 수작업을 하던 것을 이제는 프로그램을 입력을 시켜서 거기에 따라서 한꺼번에 할수도 있고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금액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물어가지고 계상을 한것 같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아니 컴퓨터가 125만원 이거든요. 지금 286컴퓨터도 150만원 가거든요. 586컴퓨터가 나와서 한

참 다니는데:.....,

○ 企劃室長 申大松 : 586이 조달가격이 152만원입니다.

○ 禹康鎬 委員 : 조달가 컴퓨터가 152만원이고 프린터가 320만원이면 조금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물론 저희가 하게 되면 구입할때 회계부서에서 또 구입을 하겠습니까만 조달가로 책정된것은 조달요청을 할것이고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더주고 살일은 없을테니까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제가 보니까 컴퓨터가 152만원인데 프린터가 320만원이니까 제가 컴퓨터 판매를 10년이상 해보았는데 이런것은 처음 봤습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컴퓨터는 조달가격으로 계상이 되었고 밑의 예산서출력용프린터기는 현재 코리아제록스에서 최신형으로 나와있는 가격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나중에 이것은 수의계

약으로 살수 있는 거네요?

○ 企劃室長 申大松 : 제가 다시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알았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이수현 위원입니다. 경비내역에 25페이지에 관보 보급하고 대한민국 법령집 구입해서 4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당초에 3,786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배부처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예산계상 이후에 단가가 인상이 되가지고 인상에 따라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알겠습니다.

○ 委員長 李相燾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5時26分 散會)

【 議 席 】

○ 議席表 (266 面に 실음)

○ 出席委員

委員長 李相薰

幹事 李慶鎭

委員 劉燉文

委員 李洙現

委員 禹康鎬

委員 金鍾永

○ 委員아닌 議員

議長 金樂雲

○ 出席公務員

企劃室長 申大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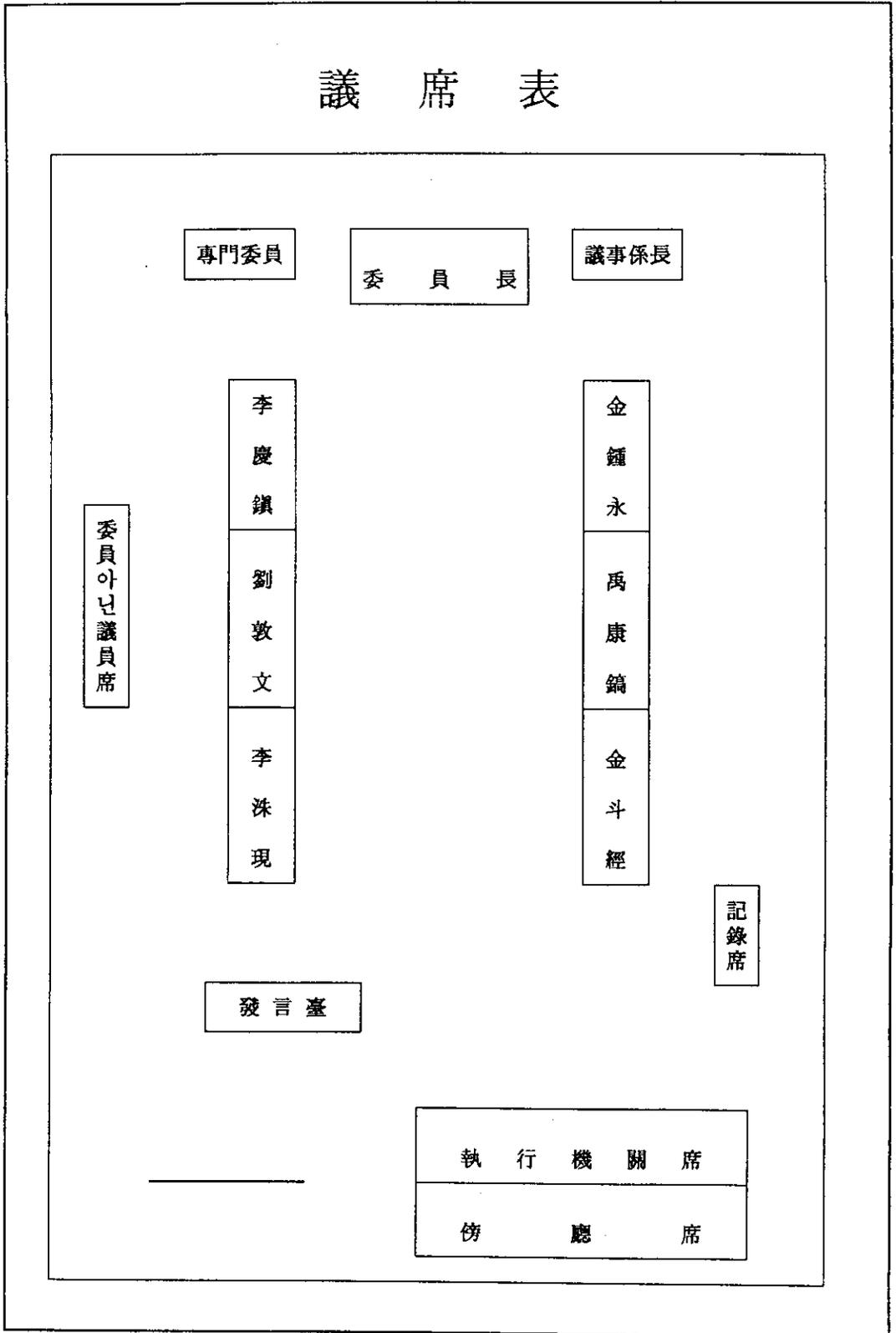
議會事務課長 李京植

○ 議會事務課

專門委員 辛敎善

議事係長 咸京鎬

議 席 表



1995年度第2回平昌郡一般會計與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

檢 討 報 告 書

目 次

I 概 要

1. 會計別 規模

2. 一 般 會 計

가. 歲入規模

나. 歲出豫算內譯

(1) 經濟性質別

(2) 機 能 別

다. 繼續事業費調書

3. 特別會計

가. 上水道特別會計

나. 住宅事業特別會計

다. 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

라. 새마을所得事業運營管理特別會計

마. 低所得住民生活安定基金特別會計

바. 農工地區造成 및 管理事業特別會計

II 檢討意見

1. 一般會計

2. 特別會計

1995年度第2回平昌郡一般會計及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

檢 討 報 告 書

I. 概 要

1. 會計別 規模

(單位:천원)

會計別	規 模	1995年度 豫 算 額			備考
		豫 算 額	既定豫算額	2回 追更	
計		75,085,820	69,826,682	5,259,138	107
一 般 會 計		68,484,141	63,331,397	5,152,744	108
特 別 會 計		6,601,679	6,495,285	106,394	102
	上 水 道	4,439,053	4,416,053	23,000	101
	住 宅 事 業	729,873	724,873	5,000	101
	醫 療 保 護 基 金	530,398	474,056	56,342	112
	새마을所得事業 運 營 管 理	413,981	513,981	△100,000	81
	低所得住民生活 安 定 基 金	155,948	155,862	86	100
	農工地區造成 및 管 理 事 業	302,426	180,460	121,966	168
	발전소 周 邊 地 域 支 援 事 業	30,000	30,000	0	100

- 19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5,259백만원으로 일반회계 5,153백만원 특별회계 106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예산신장율은 기정예산대비 7%증가 하였음.

2. 一般會計

가. 歲入規模

(單位: 千圓)

區 分	1995年度 豫 算 額					備考
	豫 算 額	構 成 比	既定豫算額	2 回 追 更	伸 張 率	
計	68,484,141	100	63,331,397	5,152,744	108	
地 方 稅	7,064,771	10	6,462,771	602,000	109	
稅 外 收 入	6,657,153	10	5,710,257	946,896	117	
經常的	3,623,075	5	3,587,591	35,484	101	
臨時的	3,034,078	5	2,122,666	911,412	143	
地 方 交 付 稅	24,561,000	36	24,361,000	200,000	101	
地 方 讓 與 金	6,561,759	10	4,717,751	0	100	
補 助 金	21,383,134	31	17,523,450	3,859,684	122	
國庫補助金	12,959,561	19	9,942,112	3,017,449	130	
道費補助金	8,423,573	12	7,581,338	842,235	111	
指 定 財 源	2,256,324	3	2,712,160	△ 455,836	83	
財 產 賣 却 收 入	1,963,643	3	2,712,160	△ 748,517	72	
基 金 吳 其 他	292,681	-	0	292,681	-	

-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5,153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가 증가 되었음.

주요세입내역으로는

- 지방세중 자동차세가 222백만원, 담배소비세가 200백만원이며, 종합토지세가 102백만원이고 그외 6개 세목에 78백만원임
-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의 균유재산임대료가 111백만원, 사업장 생산수입의 골재낙찰차액 113백만원이 감되었고 수수료수입중 종량제봉투판매수수료 86백만원, 도세징수교부금중 취득세 78백만원, 이자수입중 정기에금이자 100백만원이 증액 되었음.
-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94보조금등 송금지연분을 포함한 잡수입이 767백만원이고, 송정택지매각수입중 과년도분에 속하는 134백만원이 과목경정으로 증액편성 되었음
-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달동네정비사업에 200백만원임.
- 보조금중 국고보조금 3,018백만원은 '95 수해복구사업비가 3,562백만원으로 대부분이고 한우경쟁력사업에서 275백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서 220백만원, 기타 50백만원등 총 545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음.

- 도비보조금 842백만원은 '95 수해복구사업비가 440백만원이고,
문화예술회관건립비 300백만원등으로 편성 되었음

 - 지정재원중 재산매각수입에서 황계수해주택 택지매각수입 363백만원,
도암 농촌지도소 지소부지매각 181백만원, 과목경정 134백만원등
748백만원이 감 되었고,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2백만원과,
문화예술회관건립 진흥기금수입으로 200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음.
-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주재원은 13,722백만원으로 20%의 자주재원
율을 나타내고 있음.

나. 歲出豫算內譯

(1) 經濟性質別

(單位: 千圓)

區分 性質別	1995年度豫算額					備考
	豫算額	構成比	既定豫算額	2回追更	伸張率	
計	68,484,141	100	63,331,397	5,152,744	108	
人件費	10,279,857	15	10,825,580	△ 545,723	95	
物件費	7,788,270	11	7,644,532	143,738	102	
移轉經費	4,640,283	7	4,668,862	△ 28,579	99	
資本支出	44,094,999	64	38,276,996	5,818,003	115	
融資 및 出資	-	-	-	-		
保全財源	127,051		127,051	-	100	
內部去來	723,139	1	818,139	△ 95,000	88	
其他	113,923		87,606	26,317	130	
豫備費	716,619	1	882,631	△ 166,012	81	

○ 경제성질별 세출예산은 기본적경비(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가 전체의 33%를 점유하고 있으며, 자본적지출이 64%로 기정예산대비 15%증가되었음.

(2) 機能別

(單位：천원)

區分 章別	1995年度 豫 算 額					備考
	豫 算 額	構 成 比	既定豫算額	2 回 追 更	伸張率	
計	68,484,141	100	63,331,397	5,152,744	108	
議 會 費	438,893	1	446,688	△ 7,795	98	
一般行政費	20,637,532	30	18,607,226	2,030,306	111	
社會福祉費	6,792,203	10	6,902,634	△ 110,431	98	
産業經濟費	21,362,382	31	20,280,114	1,082,268	105	
地域開發費	15,744,009	23	13,913,105	1,830,904	113	
文化吳體育費	2,275,080	3	1,755,396	519,684	130	
民 防 衛 費	102,995	-	155,546	△ 52,551	66	
支 援 吳 其他 經費	1,131,047	2	1,270,688	△ 139,641	89	

○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95 수해복구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능별 내역으로는

- 의회비가 특수활동비등 8백만원이 감되었고
- 일반행정비는 2,030백만원으로 기획관리비에서 236백만원 감되었고, 공보비 7백만원, 내무행정비 2,171백만원(95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1,595백만원등), 재무행정비 88백만원(청사정비및 시설보수등) 이며,
- 사회복지비는 111백만원이 감 되었으며, 이중 복지사업비가 17백만원, 청소사업비 24백만원이 증가되고, 보건위생비에서 152백만원이 감액 되었음.
- 산업경제비 1,082백만원은 농수산비가 801백만원(95 수리시설및 농경지 수해복구사업 1,243백만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220백만원, 한우 및 젓소 경쟁력향상사업 △416백만원등), 임업비 251백만원(피해목벌채 134백만원, 임도호우피해복구 75백만원등), 지역경제비 31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음.
- 지역개발비 1,831백만원은 도시개발비 324백만원 (달동네정비 200백만원, 황계7리 소교량 수해복구 194백만원, 황계수해주택철거보상 △124백만원 등), 건설사업비 1,088백만원 (95농어촌도로및 군도수해복구 1,047백만원등), 치수및 하수사업비 408백만원 (95하천수해복구 403백만원등), 교통관리비 11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음.

- 문화및 체육비520백만원은 문화예술진흥비중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비 500백만원과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20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음.
- 민방위비에서 52백만원이 감액된것은 소방비의 의용소방대 관련 보상금 에서 37백만원등이 감액 된것임.
- 지원및 기타 경비는 139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각종 반환금편성에 따른 증액분과 일반예비비 감액편성분을 포함한 것임.

다. 繼續事業費調書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총액	진전년도이전			진년도			당해년도 계 획 액	'96년도 계 획 액	'97년도 계 획 액	비 고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남안교 가설사 공사	당초	1,097	-	-	-	-	-	359	100	638		

○ 지방자치법 제119조,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사항임.

3. 特別會計

가. 上水道特別會計

○ 歲 入

(單位: 千 元)

區 分	1995年度 豫 算 額					備考
	豫 算 額	構 成 比	既定豫算額	2回 追更	伸張率	
合 計	4,439,053	100	4,416,053	23,000	101	
事 業 收 入	556,901	12.6	556,901	0	100	
事 業 外 收 入	2,882,152	64.9	2,859,152	23,000	101	
補 助 金	1,000,000	22.5	1,000,000	0	100	

. 세입은 사업의 수입으로 잡수입중 간이상수도 주민부담금이 2개소에 23백만원임.

보조금은 진부상수도시설확장공사의 국고보조금 500백만원이 도비 보조금으로 재원간 전출이 되었음.

○ 歲 出

(單位: 千 元)

區 分	1995年度 豫 算 額					備考
	豫 算 額	構 成 比	既定豫算額	2回 追更	伸張率	
合 計	4,439,053	100	4,416,053	23,000	101	
管 理 費	191,984	4	183,514	8,470	105	
事 業 費	4,020,401	91	3,960,871	59,530	102	
地方債 償還	226,668	5	271,668	△ 45,000	83	

. 사업비중 평창상수도 누수탐사등 관련사업이 65백만원, 진부상수도 확장공사 감리비 △ 37백만원등이고

지방채상환은 94년도 토특자금 이자상환에서 45백만원이 감되었음

나. 住宅事業特別會計

○ 歲 入

(單位: 千 元)

區 分	1995年度 豫 算 額					備考
	豫 算 額	構 成 比	既定豫算額	2回 追更	伸張率	
合 計	729,873	100	724,873	5,000	101	
事 業 收 入	515,357	70	515,357	-	100	
事 業 外 收 入	214,516	30	209,516	5,000	102	

.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임.

○ 歲 出

(單位: 千·元)

區 分	1995年度 豫 算 額					備考
	豫 算 額	構 成 比	既定豫算額	2回 追更	伸張率	
合 計	729,873	100	724,873	5,000	101	
管 理 費	714,353	98	714,353	-	100	
事 業 費	15,520	2	10,520	5,000	148	

. 세출은 국민주택 용자금 관리 프로그램 구입비임.

다. 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

○ 歲 入

(單位: 千 元)

區 分	1995年度 豫 算 額					備考
	豫 算 額	構 成 比	既定豫算額	2回 追更	伸張率	
合 計	530,398	100	474,056	56,342	112	
事 業 外 收 入	12,626	2.4	12,456	170	101	
補 助 金	517,772	97.6	461,600	56,172	112	

. 세입은 국고보조금이 45백만원, 도비보조금이 11백만원임.

○ 歲 出

(單位: 千 元)

區 分	1995年度 豫 算 額					備考
	豫 算 額	構 成 比	既定豫算額	2回 追更	伸張率	
合 計	530,398	100	474,056	56,342	112	
管 理 費	6,120	1.2	6,120	-	100	
事 業 費	524,278	98.8	467,936	56,342	112	

. 세출은 의료보호사업비임.

라. 새마을所得金庫運營管理特別會計

○ 歲 入

(單位: 千 元)

區 分	1995年度 豫 算 額					備考
	豫 算 額	構 成 比	既定豫算額	2回 追更	伸張率	
合 計	413,981	100	513,981	△ 100,000	81	
事 業 收 入	890	0.2	890	-	100	
事 業 外 收 入	413,091	99.8	513,091	△ 100,000	81	

. 새입의 사업의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감액분임.

○ 歲 出

(單位: 千 元)

區 分	1995年度 豫 算 額					備考
	豫 算 額	構 成 比	既定豫算額	2回 追更	伸張率	
合 計	413,981	100	513,981	△ 100,000	81	
管 理 費	748	0.2	748	-	100	
事 業 費	413,233	99.8	513,233	△ 100,000	81	

. 세출의 사업비는 일반 용자금임.

마. 低所得住民生活安定基金特別會計

○ 歲 入

(單位: 千 元)

區 分	1995年度 豫 算 額					備考
	豫 算 額	構 成 比	既定豫算額	2回 追更	伸張率	
合 計	155,948	100	155,862	86	100	
事 業 收 入	5,451	3.5	5,728	△ 277	95	
事 業 外 收 入	150,497	96.5	150,134	363	100	

. 사업외수입중 용자금 회수 수입이 5백만원, 과년도수입에서 용자금 미회수금이 △ 5백만원임.

○ 歲 出

(單位: 千 元)

區 分	1995年度 豫 算 額					備考
	豫 算 額	構 成 比	既定豫算額	2回 追更	伸張率	
合 計	155,948	100	155,862	86	100	
管 理 費	1,566	1	1,566	0	100	
事 業 費	154,382	99	154,296	86	100	

. 사업비는 일반용자금임.

바. 農工地區造成 및 管理事業特別會計

○ 歲 入

(單位: 千 元)

區 分	1995年度 豫 算 額					備考
	豫 算 額	構 成 比	既定豫算額	2回 追更	伸張率	
合 計	302,426	100	180,460	121,966	168	
事 業 收 入	35,500	11.7	35,500	0	100	
事 業 外 收 入	266,926	88.3	144,960	121,966	184	

. 사업외수입은 용자금 회수수입임(3개업체)

○ 歲 出

(單位: 千 元)

區 分	1995年度 豫 算 額					備考
	豫 算 額	構 成 比	既定豫算額	2回 追更	伸張率	
合 計	302,426	100	180,460	121,966	168	
管 理 費	2,400	1	2,400	0	100	
事 業 費	52,680	17	52,680	0	100	
地方債 償還	163,878	54	63,878	100,000	256	
返 還 金	42,000	14	42,000	0	0	
豫備費 其他	41,468	14	19,502	21,966	213	

. 세출중 지방채상환 100백만원, 예비비 22백만원임.

II 檢討意見

1. 一般會計

가. 歲 入

- 세입은 총 5,153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증가되었음.
 - 지방세는 602백만원으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토세가 주세입으로 자동차보유증가, 담배소비량증가, 공시지가상승등에 의한 요인으로 증가 되었음.
 - 세외수입은 94년도 보조금등 송금지연분의 잡수입이 대부분이며, 금후 송금지연에 따른 당해년도 세입결합등의 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임.
 - 지방교부세는 평창읍 달동네 정비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이며,
 - 국도비 보조금은 '95년도 각종수해복구사업비와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내시된 사업비 위주로 편성 되었음.
 - 지정재원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횡계수해주택 택지의 용도변경 승인 지연에 따른 사업변정으로 인하여 감액 편성 되었으며, 도암 농촌지도소 지소부지 매각수입은 당초 인근매매 실패가의 적용 착오로 인하여 과다 책정된것에 대한 조정액이고 기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과 문화예술회관건립 진흥기금 수입등임.
- ※ 이상 세입예산을 검토하여 보면 지방세중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과 세외수입에 있어 공유재산임대료, 폐기물수집수수료, 사업장 생산수입등은 자체 재원의 근간을 차지하는 세원임에도 세입추계를 부적정하게 하므로써 추경예산에 많은 증감요인이 발생한것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세입추계에 적정이 요구되는 사항임.

나. 歲 出

- 세출예산 총 5,153백만원은 직제개편 및 결원을 적용에 따른 인건비 545백만원이 삭감되고, 자체사업비 462백만원, 95수해 복구사업 5,448백만원, 국도비보조 변경사업비 135백만원등이며 예비비 166백만원을 삭감하여 1%선을 유지토록 하였음.
- 자체사업 주요내역으로는
평창읍 달동네정비사업 200백만원, 황계진입로 확포장공사 마무리 80백만원, 용평면청사 보일러 교체외 182백만원임.
기타 95 각종공사의 입찰차액을 정리 소규모 주민편의사업에 투자를 하였음.
- '95 수해복구사업은
 - 총 5,448백만원으로 국비가 3,562백만원인 65%, 도비가 441백만원인 8%, 군비가 1,446백만원인 27%의 재원구조로 편성되어 있으나, 이중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에 군비부담 925백만원중 300백만원은 부담하고, 600백만원은 미부담되어 추후 3회추경시 국도비 중액교부 등의 결과에 따라 부담해야 할 사업으로써 실제 95 수해복구사업 확정 규모는 600백만원을 포함한 6,048백만원임.

-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이 64건에 1,595백만원, 수리시설 23건에 808백만원, 군도 14개소에 787백만원, 농로 28개소에 506백만원, 하천 복구 14건에 403백만원, 농경지복구 60ha에 386백만원, 농어촌도로 8개소에 274백만원, 소교량 14건에 272백만원, 횡계7리교량 194백만원, 기타 223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차년도 명시이월 대상 사업으로 편성되어야 할 사업들임.

○ 국도비 보조사업은

- 대부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인한 준비부담을 변경 적용사업이며 주요사업별로 보면,
-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남부지방 가뭄으로 인한 중부지방의 상대적인 사업물량 변경으로 220백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UR대비 농어촌투자사업비로 수출 백합종구 구입에 75백만원이 투자 되었고,
- 용평 오지개발사업인 저온저장고설치사업 355백만원이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 된 것은 저온저장고 추진사업에 따른 현지 주민의 법인설립으로 인하여 사업 완공후의 사후관리등 자치단체의 재산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한 위탁사업임.

○ 계속비 대상사업으로는

- 봉평 남안교가설공사 1,097백만원이며, 년부액은 95년도분이 359백만원, 96년도분이 100백만원, 97년도분이 638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이중 95년도 359백만원은 95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오지개발 사업비를 2회 추경에 계속사업비로 변경 승인신청된 부분이고 96년도 100백만원 및 97년도 638백만원은 양여금재원으로 충당될 사업으로써 연차별 재원 확보가 불확실하고 계속성이 없는 투자 계획으로 계속비 대상사업으로는 타당치 아니한 상황임

- 기타 95당초예산에 편성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중 노후 보도블럭 정비의 7건의 사업들은 전혀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가 금번 2회 추경에 타사업으로 변경투자가 된것은 지방재정운영상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들임.

2. 特別會計

특별회계는 총 6개사업에 106백만원으로 기·대비 1.6% 증가
되었음.

가. 歲 入

-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시설 주민부담금 23백만원이
계상되고, 진부상수도 확장공사 500백만원은 국고보조에서
도비 보조금으로 재원 이전이 된사항임.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사업비중 국·도비
5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100백만원이 감되었고,
-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는 3개 입주 업체로부터의
용자금회수 122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음.

나. 歲 出

- 상수도특별회계는 평창상수도 누수탐사비 50백만원,
간이상수도 신설및 보수에 23백만원이며, 진부상수도시설
확장공사 감리비 37백만원이 감액된것은 95년도 사업 발주가
늦어짐에 따른 감리비의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
볼 수 있으나,

96년도 사업분에 대한 감리비는 반드시 계상을 하여 부실공사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사항이며

기타 지방채상환 계획의 변경으로 45백만원이 감액 조정 되었음.

-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일반소득특별지원사업 용자신청이 감소하여 일반회계로 부더의 전출금 100백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주민에 대한 저리의 용자사업 임을 감안하여 추후 사업시행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이 주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

- 농공지구조성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용자금 회수 수입액으로 국내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충당을 하였음.

-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는 95년 8월 25일 평창군조례 제1467호로 평창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로 통합운영토록 공포 되었고, 공포일로부터 2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2회추경안 제출시에도 이를 적용치 않은것은 조례에 어긋나는 사항일뿐아니라 부당하고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임.